

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45
------	-----

2009년 2월 25일
도시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월 21일, 김덕배 의원 외 19인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1월 3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(2009.2.20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김덕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「서울특별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2005.3.3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2007.12.14 전면개정된 특례법에 적합하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개정된 법령명과 적합하게 「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.
- 종전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부과대상자였으나, 현행 법령에서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·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로 변경됨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공고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개정(삭제)하고자 함.(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)
- 법에서 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함.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종식)

- 본 조례개정안은 모법인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의 제명 변경과 내용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려는 것임.
- 주요 개정사항은 법령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, 부담금의 부과·징수 공고 방법(제2조) 및 절차(제3조)에 대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조항(제6조) 등을 삭제하려는 사항임.
- 이는 2005년 3월 24일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의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‘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’에서 ‘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’(이하 ‘개발사업시행자’)로 변경되었고, 개발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·징수 공고 및 절차, 그리고 이의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조항 등이 삭제됨에 따른 조문 정리로 조례 개정에 따른 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특이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특이사항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....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